

2008. 12. 17(수) 10:00

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2
2.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1. 26(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8 - 51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단지 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관리주체는 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위원은 군수가 위촉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 1명은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로 함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당, 준용,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제정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한 조항임.
- 안 제3조(적용범위)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은 적법한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에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조문규정은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바,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상위법 저촉됨)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정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타시군 조례내용 : 사업비의 50% 내 지원 → 창원 · 마산 · 진주 · 산청

-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등)부터 안 제10조(위원회 운영)까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를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관련한 사항, 소요예산의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자 : 산업건설위원회

나. 수정내용 : 붙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를

⇒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 “10명 내외” 를 ⇒ “12명 내”

○ “각 호에” 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의견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 ----- -----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 ----- ----- 1. ~ 5 (조례와 같음) ② ~ ③ (조례와 같음)	○ 조례의 조문규정을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함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 4. (생략) ④ ~ ⑦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12명 내의----- -----. ② (조례와 같음) ③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조례와 같음) ④ ~ ⑦ (조례와 같음)	○ 위원의 수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12명 내”로 수정하고, ○ “각 호의 해당하는”은 “모든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이고 “각 호의 어느 하나”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에 쓰임으로 본 조항의 뜻에 맞게 표현하기위해 수정하고자 함
별표 1중 공통기준 1. (생략) 2.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지원은 관련법규에 따른 행위허가 등을 받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생략)	별표 1중 공통기준 1. (조례와 같음) 2. ----- ----- -----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 (조례와 같음)	○ 조례의 조문규정을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함
수정의견 사유 : 이 조례의 조문 규정 중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1. 26(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8 - 52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서 위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거창군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함.(안 제2조)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
-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조정의 거부·중지·종결과 그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갈등해소 및 조정 등 행정의 중재역할범위를 정하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나. 다만,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거창군 관내의 공동주택단지 내의 분쟁실태와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11. 14.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1. 26(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라. 의안번호 : 제2008 - 53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국군기무부대 및 국가정보원 관계자 추가
-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통합방위법」

-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

⇒ 거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기타 → 그 밖에

(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제6호, 제4조제7항, 제5조제2호라목)

- ~의 규정에 의한(의하여) → ~에 따른(따라) (안 제1조, 제5조)

- 각호 → 각 호 (안 제2조,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

- 각목 → 각 목 (안 제5조제1호)

- 인 → 명 (안 제3조제1항)

- 이내 → 내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 취약지역내의 → 취약지역 (안 제5조제1호다목)

- 소속하에(협조하에) → 소속 하에(협조 하에)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라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내용이 2006. 5. 30.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안 제3조제2항 중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종전 7명에서 국군기무부대 관계자 및 국가정보원관계자를 추가하여 9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